

# 학 칙 시 행 세 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학칙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스쿨의 전공(과) 및 세부전공)** (개정 2013.3.1.) (개정 2014.3.1.) (개정 2015.3.1.) (개정 2015.9.1.) (개정 2016.3.1.) (개정 2016.05.01.)

① 학칙 제4조 ④에 의거 스쿨 내 전공(학과) 및 세부전공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7.3.1.)

(개정 2017.5.1.) (개정 2017.9.1.) (개정 2018.3.1.) (개정 2019.3.1.) (개정 2020.3.1.) (개정 2021.3.1.) (개정 2022.3.1.) (개정 2022.9.1.)

<전문학사과정>

스쿨(과)	전공	세부전공	비고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창작전공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콘텐츠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웹소설창작전공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기획, 게임운영 및 QA	
푸드	식품영양전공		
	푸드스쿨전공	조리, 카페베이커리, 식품영양, 푸드스타일리스트, 푸드콘텐츠, 팜푸드비즈니스	2018학번 포함 이전입학생에 한함.
	푸드전공		
패션뷰티스타일	패션메이커스전공		
	스타일리스트전공		
공연예술	연출극작전공		
	뮤지컬연기전공		
	연극영상연기전공		
	무대미술전공	무대디자인제작, 조명디자인	
모바일IT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미디어전공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과	전공	비고
만화애니게임학과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애니메이션전공	
	게임전공	
공연예술학과		
패션콘텐츠학과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학사행정 전반에 적용된다.

제2조의 2(정보보호) 학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학생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 장 입학 및 등록

제3조(입학)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입학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4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 47조(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 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하는 학생은 재입학 신청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9.1.)

③ <삭제>

④ 재입학생은 해당학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며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조기재입학 한 학생이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취소를 신청하여 해당 학기 성적일체를 취소하고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기재입학이라 함은 자퇴 및 제적된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1.)

⑥ 산업체위탁생이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 할 당시의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에 한 한다.

제5조(편입학) ① 편입학 지원자의 학점인정은 해당전공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② 편입학 지원자로서 본 대학에 편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조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6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② 재학생 등록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 ③,④,⑤항에서 같다)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8.1.)

③ 복학생의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

1.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가. 등록학기 수업일수 1/2(8주)이전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

나. 등록학기 수업일수 1/2(8주)의 다음날부터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의 1/2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다. 등록학기 수업일수 3/4(12주)의 다음날부터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군입대 휴학을 할 경우

가.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이전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

나.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의 다음날부터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개정 2016.3.1.) (개정 2017.3.1.) (개정 2020.7.1.)

3.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군휴학으로 인정한다.

④ 수업연한 초과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학점이 1~3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6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신청 학점이 4~6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3을 납입하여야 한다.

3. 신청 학점이 7~9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2을 납입하여야 한다.

4. 신청 학점이 10학점 이상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유급된 학생 및 수업연한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삭제> (개정 2012.8.1.)

### 제 3 장 수강신청 및 강의

**제7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재학연한 기간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재학연한 기간 중 학기에 개설된 경우는 중복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5.3.1.) (개정 2019.3.1.)
- ③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고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수강신청 내역의 착오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개정 2022.9.1.)
- ④ <삭제> (개정 2017.09.01.) (개정 2022.3.1.)
- ⑤ ~~수강신청 내역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수강신청내역의 착오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개정 2017.3.1.)

**제7조의2(자율선택 수강신청)** ① 소속이 다른 스쿨 또는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에는 자율선택수강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소속 스쿨과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을 운영하는 스쿨의 원장 승인을 받아 한 학기당 학점에 관계없이 3과목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그 이상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 (개정 2022.3.1.)

② 자율 선택 수강신청의 허가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3.1.) (개정 2022.3.1.)

③ 자율선택 수강신청으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표시하며, 스쿨성적 사정회의 심의에 의해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융합콘텐츠스쿨은 융합전공제 인정 교육과정 내 교과목의 학점취득시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타스쿨학생들의 융합콘텐츠스쿨 교과목 학점취득시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1.3.1.) (개정 2022.3.1.)

**제8조(수강신청학점)**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 이상 22학점 이하로 한다(학년도를 2학기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재학생과 학칙 제28조 ③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얻은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1.) (개정 2019.3.1.)

**제9조(성적불인정)** 학교에서 정한 수강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① 매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개설과목의 폐강, 강의 시간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인이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수강신청의 착오나 오류가 추후 발견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개정 2017.3.1.) (개정 2019.3.1.)

- ② **수강신청한 학점에 대해 학기당 1회의 한하여 취소기간에(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9.1.)
- ③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할 경우에도 한 학기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5학점이상의 학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제11조(재수강 신청)** ① 학점 미취득 교과목 또는 성적등급 C+(79점) 이하 취득 교과목은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

- ② 졸업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학점 미취득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③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해당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대체과목인정표에 의거하여 대체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신설 2019.3.1.)
- ④ 재수강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다른 과목과 동일한 절차로 수강신청한다. (신설 2019.3.1.)
- ⑤ 재수강한 교과목의 최종 성적은 재수강 신청한 학기의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4.)

**제12조(수강지도 및 처리)**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개정 2022.3.1.)

**제13조(강의 시간표)** ① 강의시간표는 스쿨별로 작성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개강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제13조의2(대체과목)** 당해 학기 이전의 재수강 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때에는 매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보고서에 대체과목을 정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해야 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재수강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경우 재수강 대상 과목의 동일 학년, 학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5.3.1.) (개정 2020.3.1.) (개정 2022.3.1.)

**제13조의3(교수요목)** 매 학년도 교육과정편성보고서에 개설 교과목의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개정 2020.3.1.) (개정 2022.3.1.)

**제14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수업준비 일정에 맞추어 강의계획서를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 하여 수강신청시 학생이 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3.1.) (개정 2020.3.1.)

**제14조의2(평가계획서)** ① 교수요목 에 근거하여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계획서에 의거한 시기와 수행준거에 따라 학생의 직무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개정 2019.3.1.) (개정 2022.3.1.)

- ② 평가계획에는 20점 이상의 출석점수와 2회 이상의 직무역량평가점수를 반드시 포함한다. 직무역량 평가의 시행시기와 횟수는 교수자가 강의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9.1.) (개정 2015.9.1.) (개정 2016.3.1.) (개정 2019.3.1.) (개정 2022.3.1.)

**제15조(합동강의)** 학교운영 및 교육상 필요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동강의를 할 수 있다.

## 제 4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6조(휴학)**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입대휴학,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1. 군입대 휴학생은 휴학원에 군입영 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야 한다. 또한 의무 군 복무기간 종료 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자 할 때에는 1년단위의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22.3.1.)

2. 일반 휴학생은 휴학원에 보호자 연서의 휴학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수업일수 1/4(3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질병휴학생의 경우는 휴학원에 전문의료 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일반 휴학생이 휴학기간 중에 입영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한다. (개정 2019.3.1.)

5. 신입생은 입학학기 중 일반휴학을 불허한다.

6. 조기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의 경우는 조기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가 허가 또는 승인된 당해 학기 중 일반휴학을 불허한다.

7. <삭제>

8. 산업체위탁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제19조(복학) ⑥항의 기준을 준수 할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9.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개정 2022.3.1.)

10. 졸업유예자는 휴학을 불허한다. (신설 2022.3.1.)

**제17조(자퇴)** ①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에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퇴한 학생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제적)**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19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매 복학 학기 개시 후 3주(21일) 이내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한다. (개정 2022.3.1.)

② <삭제>

③ 학기 개시 이후 또는 복학 허용마감일 이후 제대하는 복학생의 경우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휴가증사본,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 추천서 등을 제출할 경우 복학할 수 있다.

④ 조기복학 한 학생은 성적취소를 신청하여 해당 학기 성적 일체를 취소하고 당해 학기 등록금 (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조기복학이라 함은 복학예정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3.1.)

⑤ <삭제>

⑥ 산업체위탁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과가 개설되어 있을 경우에만 복학할 수 있다.

## 제 5 장 교육과정 편성

**제2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변천하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 핵심역량 달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직무분석을 통해 교과목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학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탄력성 있게 편성한다. (개정 2019.3.1.) (개정 2020.3.1.)

② <삭제>

③ 교육과정은 매학년도 시작 전에 스쿨에서 작성하여 교육과정편성지침의 절차에 따라 학기개시일 1개월 전에 확정한다. (개정 2015.3.1.) (개정 2021.3.1.)

④ 특별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현장실습)** 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소관업무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1.) (개정 2015.3.1.) (개정 2016.3.1.)

②, ③, ④, ⑤, ⑥, ⑦ <삭제> (삭제 2015.3.1.)

## 제 6 장 수 업

**제22조(수업)** ① 수업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② 수강신청자가 12인 미만일 때는 이를 폐강 할 수 있다. 단, 재학 인원이 12인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폐강처리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3.1.) (개정 2020.7.1.)

③ 유아교육과의 유치원실습, <삭제>, 보육실습 과목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23조(휴.결강)** ① 담당교수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 시작 후 20분까지 출강하지 않은 교과목은 결강으로 처리한다.

② 공, 사적인 사유로 휴,결강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전자출결시스템에 그 사유를 포함한 휴,보강계획을 신청하고 스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

③ <삭제> (개정 2020.7.1.)

④ 집중수업의 결강에 따른 보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집중수업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1.) (개정 2019.3.1.)

제23조의2(보강) 결강은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하며, 보강을 실시할 때 강좌별 합반 수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개정2019.3.1.) (개정 2020.7.1.)

제24조(출석) ① 각 교과 담당교수는 교과별 출석부에 수강신청자의 출결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무계출 결석일수가 2주를 초과하면 출석을 독려한다. (개정 2019.3.1.)

③ 학점인정을 위한 학생의 출석일수는 각 교과목별로 산정하며, 성적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3.1.)

제25조(출석인정) 다음에 해당된 결석자는 [별지3] 출석인정허가원 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3.1.) (개정 2019.3.1.) (개정 2022.9.1.)

① 아래 인정사항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세부운영지침’을 따르며 그 외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 (개정 2020.3.1.) (개정 2020.7.1.) (개정 2022.9.1.)

사유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가족의(친가, 외가) 사망	5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징병검사	검사당일 + 2일이내	징병검사 통지서
질병 및 사고에 의한 입원	사안별 7일 이내 (휴일포함)	입원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국가전염병 등교 중지 기간	국가전염병 확인 가능한 진료기록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훈련기간	훈련참석 확인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행사 참여기간	확인 가능한 정부기관 초청, 요청 공문서 등
본인의 결혼	5일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발급 서류
본인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 출산	5일	출생증명서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	면접당일+2일이내	면접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 (사실)확인서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허가기간	허가에 필요한 서류 별도 안내
생리공결	월1일 (진료확인서 일자)	진료확인서

## 제 7 장 학생평가 및 시험

제26조(학생평가) ① 학생이 교과목에서 달성해야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매학기 2회 이상 직무역량평가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 (개정 2020.3.1.) (개정 2022.3.1.)

② 평가의 방법은 교과목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개발시 교수요목에 기재한다.

③ 수강 신청한 학생에게 해당 교과목에서 평가받게 되는 수행준거와 평가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학생이 교과목에서 달성해야하는 평가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9.3.1.)

④ 수업 중 평가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에게 변경된 사항을 고지하여 학생들이 변경된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2019.3.1.)

**제27조(성적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평점평균으로 하되 출석과,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9.1.) (개정 2016.3.1.) (개정 2019.3.1.) (개정 2022.3.1.)

② <삭제>

③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성적 취득학점
2. 총점 순위자
3. 3학점이상 과목 다 취득자
4. 위 3개 항목이 같은 경우 동점처리

④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이후 군휴학한 휴학생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직무역량평가 1)만으로 기말고사(직무역량평가 2)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3.1.) (개정 2022.3.1.)

**제28조(과제물 부여 및 부정기 시험)** <삭제> (개정 2015.9.1.)

**제29조(성적의 인정)** 일반 교과목의 성적이 D0 급 이상인 학생은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0조(진급인원)** <삭제>

**제31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취득한 성적
2.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총 수업일수 중 1/4(3주)을 초과하여 무계출결석)
3.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5. 제4조 ⑤항, 제19조 ④항에 의하여 취소한 성적
6.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7. 중복 수강신청 하여 취득한 성적

**제32조(추가시험 및 시험결시자 성적처리)** ① 징병검사, 질병(전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 상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해당 교과목 시험일시 이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참원(별지 1)을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1.) (개정 2019.3.1.)

② 시험기간 중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불참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스쿨원장에게 제출하고, 스쿨원장은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통지하며, 각 과목 담당교수는 반영 비율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1.) (개정 2016.3.1.) (개정 2020.3.1.) (개정 2022.3.1.)

결 시 구 분	사유	반영 비율	성 적 반 영 방 법
.국가에서 부과하는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국가적 재난 및 비상재해로 인한 결시 .총장이 승인한 학교공무결시	. 질병검사 .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 정부기간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100%	1. 중간고사(직무역량평가 1) 결시자 : 기말고사(직무역량평가 2)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경조사에 의한 결시	. 직계가족의(친가,외가)사망	90%	2. 기말고사(직무역량평가 2) 결시자 : 중간고사(직무역량평가 1)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결시	.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 질병 및 사고에 의한 입원	80%	

제33조(성적열람 및 정정) ① 성적열람 기간 내 성적열람을 하여야 한다.

② 열람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정정 할 수 있다.

③ <삭제>

## 제 8 장 학사경고, 유급, 수료, 졸업(개정 2013.3.1.)

제34조(학사경고) 매학기 마다 성적 평점평균이 1.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1.)

① 성적평가의 결과 평점평균 1.0 미만의 학생에게는 학기별 학습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학사경고를 성적표에 표기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9.3.1.)

② 학사경고자의 지도교수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학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개정 2019.3.1.)

제35조(유급) ① <삭제> (개정 2013.3.1.)

② 동일학년 1,2학기를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상위학년으로의 진급을 제한하며, 이를 유급이라 한다. (개정 2019.3.1.)

③ 학생의 유급사실을 성적표에 기재하여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신설 2019.3.1.)

④ 유급된 학생은 차년도 등록시 학년이 변동되지 않으며, 학년에 따른 직무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을 지도하도록 한다. (신설 2019.3.1.) (개정 2022.3.1.)

제36조(진급) ① <삭제>

② <삭제>

**제37조(졸업 및 수료)** ① 당해학과(또는 전공)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충족된 학생으로서 졸업사정회를 통과한 학생에게는 전문학사 학위(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중 교육과정상 필수 교과목(교양, 전공)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졸업 및 수료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졸업학점이 충족된 학생이 졸업 유예를 희망할 경우 졸업사정회 전까지 졸업유예 신청서(별지 2)를 스쿨행정실에 제출하면 최대 1년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학위수여 유예학생은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3.1.) (개정 2022.3.1.)

④ <삭제> (개정 2020.7.1.)

**제38조(수업연한 초과 졸업)** ① 졸업대상자 중 수업연한 내 졸업에 충족되는 학점을 미취득 할 경우 수업연한 초과 졸업에 해당한다. (개정 2019.3.1.) (개정 2022.3.1.)

② 취득학점이 78학점(2년제), 117학점(3년제) 이상인 학생이라도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학점을 미 취득하였을 경우 수업연한 초과 졸업에 해당한다. (개정 2019.3.1.)

③ 수업연한 초과 졸업대상자의 등록금 납입은 학칙시행세칙 제 6조 4항에 의한다.

④ 수업연한 초과 졸업학년도는 전기 졸업학년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제 9 장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9조(교양)** 구 교육과정을 이수했던 휴학생이 복학하였을 때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구 교육과정의 교양필수과목이 신 교육과정에 설치되지 않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 3. 1.)

**제40조(전공필수)** ① <삭제>

② 삭제된 과목은 대체학점인정표에 의거한 지정된 대체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대체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공 교과목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③ 동일 교과목이 학점 변경된 후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당해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 10 장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제41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①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

정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증명서 1통을 스쿨 행정실에 제출하여 스쿨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1.) (개정 2017.3.1.)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민등록번호
4. 기 타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정된 사항은 학적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 제 11 장 제증명 발급

**제42조(증명서의 종류)** 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재학생으로 당해학기까지의 등록을 필한 학생
2. 재적증명서: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
3. 수료증명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학생
4. 졸업증명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
5. 성적증명서: 기 졸업 자 및 재학 당해 학기까지의 등록과 수강신청을 필한 학생
6. 성적예정증명서: 재학생으로 당해학기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성적이의신청 마감일 익일부터 대학사정회 전달까지 발급 (신설 2021.3.1.)
7. 졸업예정증명서: 졸업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을 낸 자 중, 기 취득학점과 졸업예정 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총합이 졸업이수 학점 기준에 충족한 학생 (개정 2019.8.14.) (개정 2021.3.1.)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경우, 1학기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성적사정결과 취득학점이 127학점(전문학사과정 취득학점 포함)인 학생. (개정 2016.10.31.) (개정 2022.3.1.)
8. 휴학증명서: 발급시점 휴학 중인 학생
9. 기타 학업에 관계되는 증명서

**제43조(증명서 발급대장 비치)**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기 위하여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한다.

## 제 12 장 교직과정

**제44조(교직과목 개설 및 이수)** 교직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으로 하며,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5조(교직과정 운영)**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이에 따른 심의를

위해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제46조(준용)** 이 학칙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칙 제6조(등록)3항의 1호에 관한 규정은 2002년 3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집단위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전공, 과) 변경 명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9.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9.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5.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0.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5.1.)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9.1.)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7.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3.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3.1.)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9.1.)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스쿨별(콘텐츠) 규정 주요 내용 <삭제> (개정 2013.3.1.)(개정 2013.9.1.)(개정 2014.3.1.)(개정 2015.3.1.)

[별표 1] 스쿨별(애니메이션) 규정 주요 내용 (신설 2015.3.1.) (개정 2019.3.1.) (개정 2020.3.1.)

스쿨명	애니메이션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전 공 명 애니메이션	학 위 이 름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p>1. 학점이수: 6학기 총 117학점 이상</p> <p>2. 전공 이수학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전 공</td> <td style="width: 50%;">이 수 학 점</td> </tr> <tr> <td>애니메이션</td> <td>80학점 이상</td> </tr> </table> <p>3.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 (교양필수 4학점 이상 이수 반드시 포함)</p>		전 공	이 수 학 점	애니메이션	80학점 이상
전 공	이 수 학 점					
애니메이션	80학점 이상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p>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가.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운영은 「스쿨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나. 스쿨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절차 및 선발 2)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학점인정 기준</p> <p>2.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p>					
적용시기	<p>1. 콘텐츠스쿨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애니메이션스쿨 학생으로 편입된다.</p> <p>2. 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2013학년도 콘텐츠스쿨 애니메이션전공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전 콘텐츠스쿨 애니메이션전공 입학자의 경우는 이전의 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p> <p>3. &lt;삭제&gt;</p> <p>4. &lt;삭제&gt;(개정 2022.3.1.)</p>					

[별표 1] 스쿨별(만화콘텐츠) 규정 주요 내용 (신설 2015.3.1.) (개정 2017.3.1.) (개정 2019.3.1.) (개정 2020.3.1.)

스쿨명	만화콘텐츠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공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학위이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웹툰만화콘텐츠</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콘텐츠전문학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웹소설창작</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콘텐츠전문학사</td> </tr> </table>		전공명	학위이름	웹툰만화콘텐츠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웹소설창작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전공명	학위이름							
웹툰만화콘텐츠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웹소설창작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p>1. 학점이수: 6학기 총 117학점 이상</p> <p>2. 전공 이수학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수학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웹툰만화콘텐츠</td> <td style="text-align: center;">80학점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웹소설창작</td> <td style="text-align: center;">80학점 이상</td> </tr> </table> <p>3.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 (교양필수 4학점 이상 이수 반드시 포함)</p> <p>4. 스쿨 졸업심사(사정)에 통과한 자: 웹툰만화콘텐츠전공만 해당</p>		전공	이수학점	웹툰만화콘텐츠	80학점 이상	웹소설창작	80학점 이상
전공	이수학점							
웹툰만화콘텐츠	80학점 이상							
웹소설창작	80학점 이상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p>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가.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운영은 「스쿨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나. 스쿨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절차 및 선발 2)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학점인정 기준</p> <p>2.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p>							
적용시기	<p>1. 콘텐츠스쿨 만화창작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만화콘텐츠스쿨 학생으로 편입된다.</p> <p>2. 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2013학년도 콘텐츠스쿨 만화창작전공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전 콘텐츠스쿨 만화창작전공 입학자의 경우는 이전의 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p> <p>3. &lt;삭제&gt;</p> <p>4. &lt;삭제&gt;(개정 2022.3.1.)</p>							

[별표 1] 스쿨별(게임콘텐츠) 규정 주요 내용 (신설 2015.3.1.) (개정 2016.3.1.) (개정 2019.3.1.) (개정 2020.3.1.)

스쿨명	게임콘텐츠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전 공 명 게임	학 위 이 름 게임콘텐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p>1. 학점이수: 6학기 총 117학점 이상</p> <p>2. 전공 이수학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 공 게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 수 학 점 80학점 이상(전공필수학점 포함)</td> </tr> </table> <p>3.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 (교양필수 4학점 이상 이수 반드시 포함)</p> <p>4. 기타 학년도별 졸업요건은 스쿨원장이 따로 정한다.</p>		전 공 게임	이 수 학 점 80학점 이상(전공필수학점 포함)
전 공 게임	이 수 학 점 80학점 이상(전공필수학점 포함)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p>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가.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운영은 「스쿨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나. 스쿨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절차 및 선발 2)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학점인정 기준</p> <p>2.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p>			
적용시기	<p>1. 콘텐츠스쿨 게임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게임콘텐츠스쿨 학생으로 편입된다.</p> <p>2. 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2013학년도 콘텐츠스쿨 게임전공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전 콘텐츠스쿨 게임전공 입학자의 경우는 이전의 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 단, 에코디자인전공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p> <p>3. &lt;삭제&gt;</p> <p>4. &lt;삭제&gt;(개정 2022.3.1.)</p>			

[별표 1] 스쿨별(푸드) 규정 주요 내용 (개정 2013.3.1.) (개정 2013.9.1.) (개정 2014.3.1.) (개정 2015.3.1.)(개정 2016.3.1.) (개정 2017.3.1.) (개정 2019.3.1.) (개정 2020.3.1.)

스쿨명	푸드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전 공 명	학 위 이 름
	조리전공	조리전문학사
	식품영양전공	식품영양전문학사
	외식경영전공	외식경영전문학사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산업예술전문학사
	카페베이커리전공	제과제빵전문학사
	팜푸드비즈니스전공	푸드산업전문학사
	푸드콘텐츠전공	푸드산업전문학사
	푸드스쿨전공	푸드산업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1. 학점이수: 6학기 117학점 이상 2. 전공 이수학점(신설 2017.3.1.)	
	전 공	이 수 학 점
	푸드스쿨	80학점 이상
	3.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 (교양필수 4학점 이상 이수 반드시 포함) 4. <삭제>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1. <삭제> 2. 푸드시쿨 이전 푸드스타일리스트과, 플로랄디자인과, 에코스타일리스트전공의 재적생은 푸드시쿨 재적생으로 본다.(개정 2014.3.1) 3. 푸드스타일리스트과,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에코취진코스, 푸드스타일링코스) 재적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푸드시쿨의 개설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3.1) (개정 2019.3.1.) 4.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할 수 있다.(신설 2016.3.1.) 5. 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2017학년도 푸드시쿨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3.1.) 6. <삭제>(개정 2022.3.1.)	

[별표 1] 스쿨별(패션) 규정 주요 내용 (개정 2013.3.1.) (개정 2013.9.1.) (개정 2014.3.1.) (개정 2019.3.1.) (개정 2020.3.1.)

스쿨명	패션뷰티스타일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전 공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학 위 이 름</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디자인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디자인전문학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스타일리스트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전문학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스쿨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전문학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메이커스스타일리스트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전문학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메이커스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전문학사</td> </tr> </table>	전 공 명	학 위 이 름	패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전문학사	패션스쿨전공	패션전문학사	패션메이커스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전문학사	패션메이커스전공	패션전문학사	
전 공 명	학 위 이 름													
패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전문학사													
패션스쿨전공	패션전문학사													
패션메이커스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전문학사													
패션메이커스전공	패션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조건)	<p>1. 학점이수: 6학기 117학점 이상 2. 전공 이수학점(2019.3.1.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전 공</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 수 학 점</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스쿨전공</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80학점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디자인전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스타일리스트전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메이커스스타일리스트전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패션메이커스전공</td> </tr> </table> <p>3.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 (교양필수 4학점 이상 이수 반드시 포함)</p>		전 공	이 수 학 점	패션스쿨전공	80학점 이상	패션디자인전공	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메이커스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메이커스전공				
전 공	이 수 학 점													
패션스쿨전공	80학점 이상													
패션디자인전공														
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메이커스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메이커스전공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p>&lt;삭제&gt;</p> <p>1.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p> <p>2. &lt;삭제&gt;(개정 2022.3.1.)</p> <p>3. 모집이 정지된 패션메이커스전공의 경우 학칙의 부칙 제3조를 따른다.</p>													

[별표 1] 스쿨별(공연예술) 규정 주요 내용 (개정 2013.3.1.) (개정 2013.9.1.) (개정 2019.3.1.) (개정 2020.3.1.)

스쿨명	공연예술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전 공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학 위 이 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뮤지컬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연예술전문학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극영상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연예술전문학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출극작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연예술전문학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무대미술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연예술전문학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뮤지컬연기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연예술전문학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극영상연기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연예술전문학사</td> </tr> </tbody> </table>	전 공 명	학 위 이 름	뮤지컬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연극영상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연출극작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무대미술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뮤지컬연기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연극영상연기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전 공 명	학 위 이 름															
뮤지컬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연극영상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연출극작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무대미술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뮤지컬연기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연극영상연기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조건)	<p>1. 학점이수: 3년제(6학기 117학점 이상)</p> <p>2. 전공 이수학점(2020.3.1.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전 공</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 수 학 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연예술</td> <td style="text-align: center;">80학점 이상</td> </tr> </tbody> </table> <p>3.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 (교양필수 4학점 이상 이수 반드시 포함)</p> <p>4. &lt;삭제&gt;</p> <p>5. &lt;삭제&gt;</p>		전 공	이 수 학 점	공연예술	80학점 이상										
전 공	이 수 학 점															
공연예술	80학점 이상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p>1. 2013학년도부터 무대미술전공 졸업시험제도를 폐지하며,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개정 2013.3.1.)</p> <p>2.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05.01.)</p> <p>3. &lt;삭제&gt;(개정 2022.3.1.)</p>															

[별표 1] 스쿨별(모바일) 규정 주요 내용 (개정 2017.3.1.) (개정 2019.3.1.)

스쿨명	모바일IT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전공명	학 위 이 름
	모바일통신전공	공업전문학사
	스마트폰전공	공업전문학사
	모바일보안전공	공업전문학사
	스마트미디어전공	스마트콘텐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조건)	1. 학점이수	
	전공명	이수학점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폰전공 모바일보안전공 (4학기 2년제)	- 총 이수학점 : 78학점 이상 -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8학점 이상(교양필수 4학점 이상 이수 반드시 포함) - 전공학점 : 60학점 이상
	스마트미디어전공 (6학기 3년제)	- 총 이수학점 : 117학점 이상 -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교양필수 4학점 이상 이수 반드시 포함) - 전공학점 : 90학점 이상
	2. 전공이수 학점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p>1. 모집이 정지된 전공의 경우 “학칙의 부칙(개정2016.3.1.)제2조”를 따른다.</p> <p>2.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할 수 있다.</p> <p>3. &lt;삭제&gt;(개정 2022.3.1.)</p>	

[별표 1] 유아교육과 규정 주요 내용 (개정 2013.3.1.) (개정 2013.9.1.) (개정 2019.3.1.) (개정 2020.3.1.) (개정 2021.3.1.) (개정 2022.3.1.) (개정 2022.9.1.)

학과명	유아교육과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학과명	학 위 이 름
	유아교육과	교육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조건)	1. 학점이수: 3년제(6학기 117학점 이상) 2. 교양이수학점: 대학교양 및 학과 교양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	(신설 2019.3.1.)	
	구분	이수학점
	1. 전공	50학점이상
	2. 교직	22학점
	3. 교직인적성 검사	졸업까지 2회 통과(70점) 이상
	4. 응급처치	졸업까지 2회 수료(수료증 취득)
	1~4번까지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기타 학과 중요 규정 사항	1. 교양학점 이수 (신설 2019.3.1.) 2019학번부터 대학교양 이수를 위하여, 학과교양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교직인성 리더십 I 자기개발], [교직인성 리더십 II 대인관계], [교직인성 리더십 III 교직원], [교직인성 리더십 IV 공동체] 등 2학점 과목 4과목을 이수하고, 교양교육원(리케이온) 개설 과목 중에서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총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b>단,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유아교육과 대체과목 인정표'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b> 2. 유아교육과의 모집정지로 인해,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3.1.) 3.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21.3.1.)	



[별표 1] 융합콘텐츠스쿨 규정 주요 내용 (신설 2021.3.1.)

스쿨명	융합콘텐츠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전공명	학위이름
	융합콘텐츠창작	융합콘텐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1. 학점이수: 6학기 총 117학점 이상 2. 전공 이수학점	
	전공	이수학점
	융합콘텐츠창작	70학점 이상(전공필수학점 포함)
	3. 교양이수학점: 10학점 이상(교양필수 4학점 이상 이수 반드시 포함) 4. 기타 학년도별 졸업요건은 스쿨원장이 따로 정한다.	
기타 스쿨별 주요 규정 사항	1. 융합콘텐츠스쿨은 부전공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단, 유아교육과 제외) ① 목적 :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기 주도형 융합콘텐츠 창작자 양성한다. ② 대상 : 융합콘텐츠스쿨 재학생 ③ 교과목 이수 범위 : 부전공 가능 스쿨이 지정한 교과목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 된다. ④ 신청기간 : 3학년 2학기 내에 공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부전공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부전공 인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부전공 이수 조건을 충족하여도 부전공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⑤ 승인 : 부전공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각 스쿨에서 개설한 부전공 인정 교과목(스쿨별 부전공 필수과목 포함)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승인한다. ⑥ 수강신청 :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경쟁수강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⑦ 위 규정 외에 부전공 관련 사항들은 스쿨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적용시기	1. 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2021학년도 융합콘텐츠스쿨 융합콘텐츠창작전공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교양 이수학점 기준은 2021학년도 융합콘텐츠스쿨 융합콘텐츠창작전공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지1]

## 시험 불참원

학생인적사항			
스쿨(학과)명		전공	
학년		학번	
성명		연락처	
시험불참 교과목			
불참 교과목명	시험일자	담당 교수 확인	
		(인)	
		(인)	
		(인)	
		(인)	
		(인)	
시험불참 사유			

첨부 : 시험 불참 증빙 서류 1부

상기 본인은 위 사유로 \_\_\_\_\_학년도 제\_학기 (중간.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시험 불참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스쿨원장(학과장) :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2]

# 졸업 유예 신청서

학생인적사항		
스쿨(학과)명		전공
학 년		학 번
성 명		연락처
졸업유예 신청정보		
졸업예정 년/월	졸업유예 년/월	신청 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 일) *최대 1년
졸업 유예 사유		
유예신청	사유 작성	비고
추가 교과목 수강 (자격증 취득, 기타 교과목 등)		수업연한 초과자
기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칙시행세칙 제 37조 3항에 의거 졸업학점이 충족되어야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li><li>■ 졸업사정회 이전 유예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li></ul>		

본인은 상기 사유로 인하여 졸업을 유예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3]

# 출석인정허가원

결재	지도교수	스쿨원장

스쿨명	학년	학번	반	성명	
아래 결석사유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석 사유	사유	증빙서류	사유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직계가족(친가, 외가)의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확인 가능한 정부기관 초청, 요청 공문서 등	
	<input type="checkbox"/> 징병검사	징병검사 통지서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결혼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발급 서류	
	<input type="checkbox"/> 질병 및 사고에 의한 입원 및 국가 전염병 등의 치료	입원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또는 국가전염병 확인 가능한 진료기록	<input type="checkbox"/>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	면접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훈련참석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생리공결	진료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허가에 필요한 서류 별도 안내		
결석 기간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결석 과목	과 목 명	담당교수	수업일	수업시간	비고 (결재 후 과목별 담당교수 확인)

본인은 상기 사유로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